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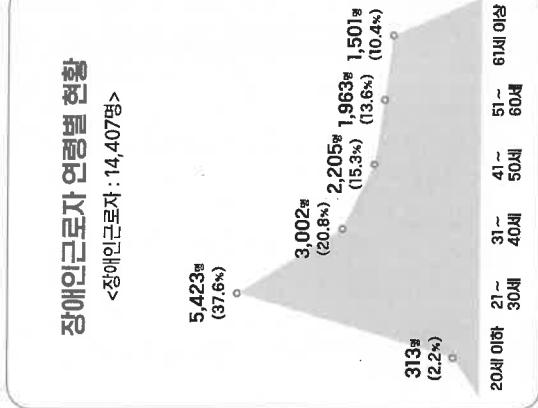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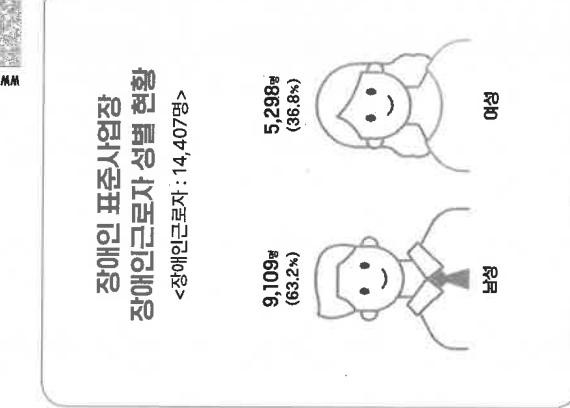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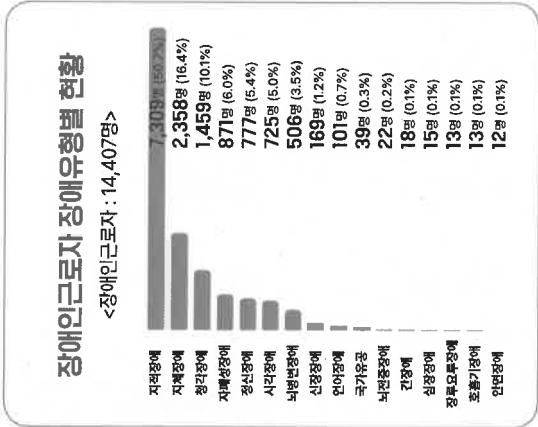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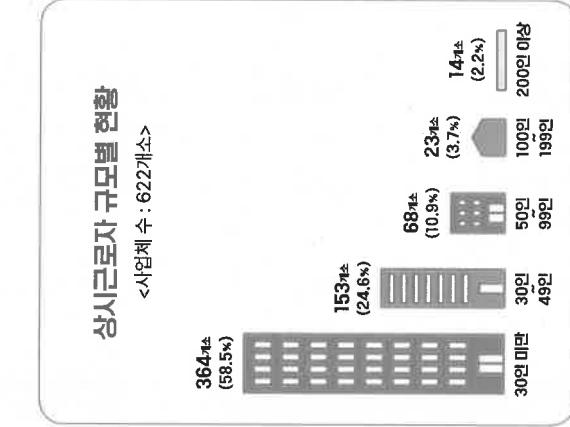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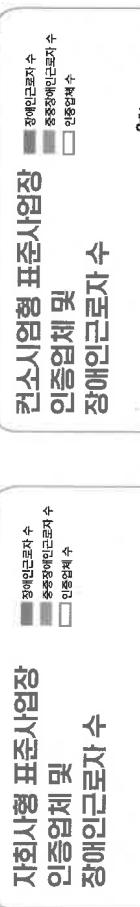
www.l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표준사업 통계 (2022년 기준)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 개요

-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 근로자 수		증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의 10% + 5명	상시 근로자 수의 5% + 20명
300명 이상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 수의 10% + 5명	상시 근로자 수의 5% + 20명

-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 인증을 받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제 연도와 그다음 과제 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범인세 또는 소득세 100분의 100 상당 금액을 감면, 그다음 2년 이내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범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 원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 장애인 및 충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것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www.withplus.or.kr](http://www.withplus.or.kr) 참조)

Bl

- 장애인 고용 사업의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인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대표하는 BI(Brand-Identity)로 장애인 고용을 통한 장애·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회합'과 '상생'의 가치를 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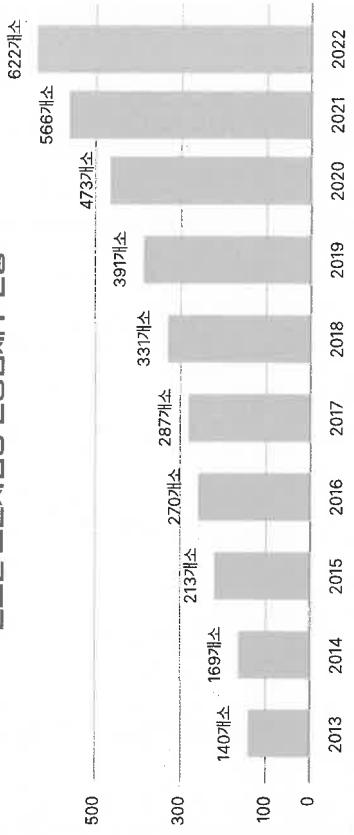
## 시행 연도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 2002-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 2013~

## 추진 근거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 ▶ 접수기간 : 수시
-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신청 전월 임금대장, 장애인근로자 명부
  - \* 신청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lead.or.kr](http://www.lead.or.kr)) 서식 차로실 첨조
- ▶ 접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연도별 표준사업장 인증업체수 현황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 지원금 지원

## 신청 자격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지급 절차

01	신청서 접수 (사업주 → 지역본부 및 지사)	02	현장 확인조사 (지역본부 및 지사)
03	외부 전문기관 평가 (인증평가단)	04	결정심사 (심사위원회)
05	선정 통보 (지역본부 및 지사 → 사업주)	06	인정 체결·이행 담보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 대상자)
07	1차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액 90%)	08	투자 완료 및 신규 고용 인원의 1/2 고용 (지원 대상자)
09	투자 확인 (지역본부 및 지사)	10	2차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액 10%)
11	1년 이내 나마지 1/2 고용 등 인증요건 충족(지원 대상자)	12	인증
13	사후관리* (지역본부 및 지사)		

\*사후관리 : 투자 완료 후 7년간 분기별 고용의무인원 및 표준사업장 인증 준수 사항 점검



## 무상 지원금의 지원한도 및 조건

### 지원한도

- ▶장애인 신규 고용 의무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소사업형의 경우 최대 20억 원)
- ▶단, 무상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 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장애인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화되며, 총 지원금액을 3천만 원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
- ▶장애인근로자 신규 고용의무 발생(7년간 고용유지, 고용의무 미이행 시 기간 연장)

## 무상 지원금 용도

###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 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임차보증금 및 토지 구입비는 제외

###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동차 구입 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해 고용한 전문가의 임금 일부(최대 1년, 월 300만 원 한도로 지원)

## 지원 대상자 선정

### 현장 확인조사, 외부 전문기관 경영 평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주 선정

- ▶사회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MOU 체결을 근거로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 결정

## 유의사항

- ▶2020.1.1일자로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법률 제 16323호)에 따라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 등이 있는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최대 5배의 제재 부과

## 사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 사회적 경제 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창업자금)

### 개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50% 초과 투자하여 자회사(장애인 표준사업장)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장애인에게 근무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 모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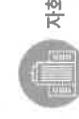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4항에 의거 2개 이상의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할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을 산입 및 출자비율에 따른 고용부담금 감면

-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2)

\* (참고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월은 부담금 감면 제외

### 자회사 설립 방법



계열사·유사업종 기업과 공동출자 형태로 설립  
출자비율만큼 장애인고용률 산입



기존 자회사 또는 협력업체를 전환  
장애인고용 30%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경우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무상 지원금을 지원  
\* 부당금 감면 장려금 지급 간접고용을 통해 부당금은 감면받고 자회사에는 정려금을 지급 받아 1석2조의 효과  
▶ ESG 경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 극대화

### 설립하면 좋은 점

▶ 무상 지원금 지급 공단과 설립 협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무상 지원금을 지원

▶ 부당금 감면 장려금 지급 간접고용을 통해 부당금은 감면받고 자회사에는 정려금을 지급 받아 1석2조의 효과

▶ ESG 경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 극대화

### 개요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미술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

※ 기준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서 초기 창업 비용까지 일부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 활성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지원

### 신청자격

▶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운영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을 사업주\*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 초기 창업자 기준)

### 지원 내용

▶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운영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위한 창업 지원금 지원  
- 창업 비용 :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회 지원  
- 지원용도 :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 지원 신청(선정) 시 기자원 된 창업 자금을 포함하여 최대 10억 원 지원  
자금을 학습하지 않음

### 지원 조건

▶ 사회적 경제 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창업 지원금 지원  
- 창업 비용 :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회 지원  
(미이행 시 창업 지원금 전액 회수)  
\* 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투자 완료 후 3년 이내에 장애인 2인 이상을 신규 채용하여 12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창업

### 지원 절차(창업 자금 지원)



##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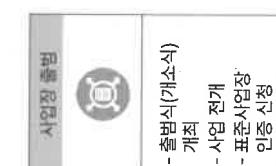
### 개요

- 중증장애인 일자리(고용) 등에 대한 국가책임 실현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설립 형태

### 지원 대상

-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 신규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무상 지원금 지급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참여 기업 및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출자비율만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용부담금 감면

### 설립 및 지원 절차



-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단 3자 협약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 연구 용역, 조례 제정 등의 절차 겸토 필요'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목적

-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용역 포함)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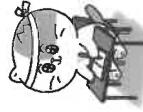
###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제1항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체품 구매촉진 및 관리지침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12.12.18. 법 개정, '13.6.19. 시행)

- (목적)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판로 개척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 (내용)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물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총 구매액의 0.8%로 규정(22.12.31. 고시 개정)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14년부터 공단에 제출)
-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관리지침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흥보사이트(위드플러스)

### 작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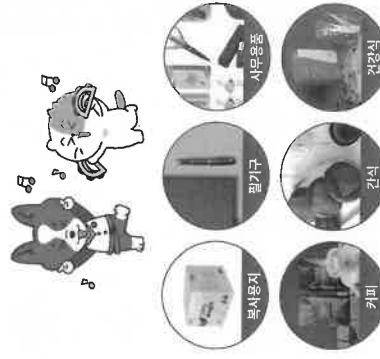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가. 국가기관  
나. 교육청 포함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위드플러스란

- (생산품 구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생산하고 있는 다양하고 경쟁력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 대기업, 일반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찾고 구매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매 지원 시스템
- (실적 제출) 공공기관은 흥보사이트를 통해 매년 2월까지 전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당해 연도 계획을 입력해야 하며, 입력된 자료는 매년 4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운영 목적

- URL : [www.withplus.or.kr](http://www.withplus.or.kr)
- 장애인 표준사업장 : 사업장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 공공기관 : 생산품 검색·구매 연계·실적 입력
  - 민간기업 : 생산품 검색·구매 연계(연계고용 등)
- 생산품 관련 정보 제공**
- 식품 : 농·축·수산물, 반찬류, 음료/간식, 기타 식품(건강식품 등)
  - 생활용품 : 의류, 학장품/비누, 신발/파션잡화, 가정용품, 기타(재활용품 등)
  - 기업/사무용품 : 문구류, 전산용품(컴퓨터 등), 산업자재, 판촉물, 기타(행사용품 등)
  - 서비스/용역 : 회계/도시락, 청소/주차/세탁, 인쇄/IT, 기타(건물관리 등)
- www.withplus.or.kr



### 작용 대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사비 제외)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생산품 흥보사이트(www.withplus.or.kr)」으로 제출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생산·  
한 물품 및 용역  
\* 생산이란 제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준사업장의장애인 근로자가 생산 또는 용역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노무(제조, 표장,  
출판권리, 출판·보관·유통)를 의미

### 간접 구매 실적 인정

-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물을 직접 구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기관과 물품 또는 용역 구매를 계약한  
업체가 표준사업장 생산물을 구매하도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한 경우 구매실적 인정

### 기타 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해  
수의계약 가능
- \* 장애인 표준사업장 명단 및 생산품 정보는 [www.withplus.or.kr](http://www.withplus.or.kr)에서 확인
- ▶ 공공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

기관명	우편번호	소재지	연락처
본 부	13619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구미동)	031)728-7001
서울 지역본부	04554	서울특별시 송구 토계로 173, 11층(총무로 3기)	02)6320-7000
부산 지역본부	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번천동)	051)640-9800
대구 지역본부	42425	대구광역시 남구 충암대로 200, 13층(대명동)	053)288-1500
광주 지역본부	61925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0층(양동)	062)448-1155
대전 지역본부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	042)620-6200
경기 지역본부	1648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	031)300-0900
서울 남부지사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6층(영등포동 2가)	02)6004-1005
서울 동부지사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림로 289, 11층(선천동)	02)2146-3500
서울 북부지사	0176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4, 2층(상계동)	02)6312-5300
인천 지사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	032)242-1004
울산 지사	44726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	052)226-1004
경기 북부지사	11649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신도 이크라티움)	031)850-4500
경기 동부지사	1363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구미동)	031)600-0209
경기 서부지사	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9층(고잔동)	031)500-2410
강원 지사	26336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033)737-6620
충북 지사	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기장동)	043)230-6400
충남 지사	3112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041)629-6000
전북 지사	54906	전라북도 전주시 턱진구 백제대로 751, 11층(인후동 2가)	063)240-2400
전남 지사	58730	전라남도 목포시 양산로 118, 7층(호남동)	061)240-0700
경북 지사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송정동)	054)450-3000
경남 지사	5151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	055)225-8000
제주 지사	63213	제주특별시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	064)710-5000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장애인 표준사업장'  
경제적 자립을 넘어 장애인이 '성장'할 수 있는 일터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622개 사업장에서 14,407명의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취업 및 경제적 지원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주체로 당당히 일어서는 사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실현합니다.

